|  |  |  |
| --- | --- | --- |
| **특허권 질권 등록방법**  국가지적재산권국 령 제56호  《특허권 질권 등록방법》을 국무(局務)회의에서 심의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텐리푸  2010년 8월 26일  **제1조** 특허권의 운용과 자금융통을 촉진시키고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고 특허권 질권등록 행위를 규율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과 《중화인민공화국 담보법》,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지적재산권국은 특허권 질권등록 업무를 관장한다.  **제3조** 특허권으로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질권 설정자와 질권자는 서면 질권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질권계약은 단독으로 체결할 수도 있고 또는 주계약 중의 담보조항일 수도 있다.  **제4조** 공유 특허권으로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공유 전원이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기타 공유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 중국에 일상적인 거처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 외국기업 또는 외국의 기타 조직이 특허권 질권등록 수속을 할 시에는 법에 따라 설립한 특허대리기구에 의뢰해야 한다.  중국의 단위나 개인이 특허권 질권등록 수속을 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설립한 특허대리기구에 의뢰해야 한다.  **제6조** 당사자는 우송, 직접 송달 등 방식으로 특허권 질권등록과 관련한 수속을 할 수 있다.  **제7조** 특허권 질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당사자는 국가지적재산권국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질권 설정자와 질권자가 공동으로 서명했거나 날인한 특허권 질권등록 신청표  (2) 특허권 질권계약  (3) 쌍방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4) 의뢰 시 위임기한을 밝힌 위임장  (5) 제출해야 하는 기타 서류.  특허권에 대한 자산평가를 실시한 경우 당사자는 자산평가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신분증명서 이외에 당사자가 제출하는 기타 각종 문서는 중국어를 사용해야 한다. 신분증명서가 외국어로 된 경우 당사자는 중국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당사자는 스캐닝문서로 이 조 제1항과 제2항이 규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국가지적재산권국은 당사자가 제출한 질권등록 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마땅히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9조** 당사자가 제출한 특허권 질권계약에는 질권등록과 관련한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이나 명칭, 주소  (2) 담보대상 채권의 종류와 금액  (3) 채무자의 채무이행 기한  (4) 특허권 건수 및 건별 특허권의 명칭, 특허번호, 출원일, 수권공고일  (5) 질권담보의 범위.  **제10조** 이 방법 제9조가 규정한 사항은 제외하고 당사자는 특허 질권계약 중에 아래의 내용을 약정할 수 있다.  (1) 질권기간의 특허권 유지비의 납부  (2) 질권기간의 특허권 양도, 실시허가  (3) 질권기간의 특허권의 무효선고 또는 특허권 권리소속 변경 시의 처분  (4) 질권을 실현 시의 관련 기술서류의 교부.  **제11조** 국가지적재산권국은 특허권 질권등록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근무일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제12조** 특허권 질권등록 신청이 심사에 통과된 경우 국가지적재산권국은 특허등록부에 등재하고 아울러 당사자에게 《특허권 질권등록 통지서》를 발송한다. 질권의 효력은 국가지적재산권국이 등재한 시부터 성립된다.  심사를 거쳐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지적재산권국은 등록불허를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특허권 질권 등록불허 통지서》를 발송한다.  (1) 질권 설정자와 특허 등록부에 등재된 특허권자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2) 특허권이 이미 종료되었거나 무효 선고를 받은 경우  (3) 특허 출원이 아직 특허권을 수여받지 못한 경우  (4) 특허권이 유지비 체납상황이 있는 경우  (5) 특허권에 대한 무효 선고절차가 개시된 경우  (6) 특허권 권리소속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거나 인민법원의 재정에 의해 특허권에 대한 보전조치가 실시되어 특허권의 질권수속이 당분간 정지된 경우  (7) 채무자의 채무이행 기한이 특허권의 유효기간을 초과한 경우  (8) 질권계약에 채무이행 기간이 만료된 후 질권자가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경우 그 특허권이 질권자에게 귀속된다고 약정한 경우  (9) 질권계약이 이 방법 제9조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10) 공유 특허권으로 질권을 설정했으나 공유 전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  (11) 특허권 질권등록 신청이 제출되었으며 아울러 질권기간에 있는 경우  (12) 등록을 불허하는 기타 상황.  **제13조** 특허권 질권기간에 국가지적재산권국이 질권등록에 이 방법 제12조 제2항에 열거한 상황이 존재함과 아울러 지속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또는 기타 특허권 질권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특허권 질권등록을 취소해야 하며, 동시에 당사자에게 《특허권 질권등록 취소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특허권 질권등록이 취소된 경우 질권등록의 효력은 시초부터 무효로 된다.  **제14조** 국가지적재산권국은 특허공보 상에 특허권 질권등록과 관련한 질권 설정자, 질권자, 주 분류번호, 특허번호, 수권공고일, 질권등록일 등 내용을 공고한다.  특허권 질권등록 후의 변경, 취소는 국가지적재산권국이 등록 및 공고한다.  **제15조** 특허권 질권기간에 질권 설정자가 해당 특허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질권자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지적재산권국은 특허권 포기수속을 처리하지 아니한다.  **제16조** 특허권 질권기간에 질권 설정자가 해당 특허권의 양도 또는 허가실시를 동의하는 질권자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지적재산권국은 특허권 양도 등록수속 또는 특허실시계약 등록 수속을 처리하지 아니한다.  질권 설정자가 질권을 설정한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그 허가를 타인에게 허용하는 경우 질권 설정자는 그가 수취한 양도비, 허가비로 질권자에게 채무를 선 변제하거나 공탁시켜야 한다.  **제17조** 특허권 질권기간에 당사자의 성명이나 명칭, 주소, 담보대상의 주 채권 종류 및 금액 또는 직권담보의 범위가 변경된 경우 당사자는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변경협의서, 원 《특허권 질권등록 통지서》와 기타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국가지적재산권국에 가서 특허권 질권등록 변경수속을 해야 한다.  **제18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특허권 질권등록 통지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지참하고 국가지적재산권국에 가서 질권등록 말소수속을 해야 한다.  (1) 채무자가 기간에 따라 채무를 이행했거나 또는 질권 설정자가 그가 담보한 채무를 앞당겨 변제한 경우  (2) 질권이 이미 실현된 경우  (3) 질권자가 그 질권을 포기한 경우  (4) 주 계약의 무효, 취소로 인해 질권계약이 무효하거나 취소된 경우  (5) 법률이 질권 소멸을 규정한 기타 상황.  국가지적재산권국은 등록말소 신청을 접수한 후 심사를 실시하고 당사자에게 《특허권 질권등록 말소통지서》를 발송한다. 특허권의 질권등록 효력은 말소일로부터 종료된다.  **제19조** 특허권이 질권기간에 무효선고를 받았거나 종료된 경우 국가지적재산권국은 질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0조** 특허권자가 규정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특허권 유지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지적재산권국은 특허권자에게 유지비 납부통지서를 발송해야 하며, 아울러 질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1조** 이 방법은 국가지적재산권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22조** 이 방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6년 9월 19일 중화인민공화국 특허국 령 제8호로 반포한 《특허권 질권계약 등록관리 임시방법》은 동일자로 폐지된다. |  | **专利权质押登记办法**  国家知识产权局令第56号  　　《专利权质押登记办法》已经局务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2010年10月1日起施行。  局 长　田力普  二○一○年八月二十六日  **第一条** 为了促进专利权的运用和资金融通，保障债权的实现，规范专利权质押登记，根据《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中华人民共和国担保法》、《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及有关规定，制定本办法。  **第二条** 国家知识产权局负责专利权质押登记工作。  **第三条** 以专利权出质的，出质人与质权人应当订立书面质押合同。  　　质押合同可以是单独订立的合同，也可以是主合同中的担保条款。  **第四条** 以共有的专利权出质的，除全体共有人另有约定的以外，应当取得其他共有人的同意。  **第五条** 在中国没有经常居所或者营业所的外国人、外国企业或者外国其他组织办理专利权质押登记手续的，应当委托依法设立的专利代理机构办理。  　　中国单位或者个人办理专利权质押登记手续的，可以委托依法设立的专利代理机构办理。  **第六条** 当事人可以通过邮寄、直接送交等方式办理专利权质押登记相关手续。  **第七条** 申请专利权质押登记的，当事人应当向国家知识产权局提交下列文件：  　　（一）出质人和质权人共同签字或者盖章的专利权质押登记申请表；  　　（二）专利权质押合同；  　　（三）双方当事人的身份证明；  　　（四）委托代理的，注明委托权限的委托书；  　　（五）其他需要提供的材料。  　　专利权经过资产评估的，当事人还应当提交资产评估报告。  　　除身份证明外，当事人提交的其他各种文件应当使用中文。身份证明是外文的，当事人应当附送中文译文；未附送的，视为未提交。  　　对于本条第一款和第二款规定的文件，当事人可以提交电子扫描件。  **第八条** 国家知识产权局收到当事人提交的质押登记申请文件后，应当通知申请人。  **第九条** 当事人提交的专利权质押合同应当包括以下与质押登记相关的内容：  　　（一）当事人的姓名或者名称、地址；  　　（二）被担保债权的种类和数额；  　　（三）债务人履行债务的期限；  　　（四）专利权项数以及每项专利权的名称、专利号、申请日、授权公告日；  　　（五）质押担保的范围。  **第十条** 除本办法第九条规定的事项外，当事人可以在专利权质押合同中约定下列事项：  　　（一）质押期间专利权年费的缴纳；  　　（二）质押期间专利权的转让、实施许可；  　　（三）质押期间专利权被宣告无效或者专利权归属发生变更时的处理；  　　（四）实现质权时，相关技术资料的交付。  **第十一条** 国家知识产权局自收到专利权质押登记申请文件之日起7个工作日内进行审查并决定是否予以登记。  **第十二条** 专利权质押登记申请经审查合格的，国家知识产权局在专利登记簿上予以登记，并向当事人发送《专利权质押登记通知书》。质权自国家知识产权局登记时设立。  　　经审查发现有下列情形之一的，国家知识产权局作出不予登记的决定，并向当事人发送《专利权质押不予登记通知书》：  　　（一）出质人与专利登记簿记载的专利权人不一致的；  　　（二）专利权已终止或者已被宣告无效的；  　　（三）专利申请尚未被授予专利权的；  　　（四）专利权处于年费缴纳滞纳期的；  　　（五）专利权已被启动无效宣告程序的；  　　（六）因专利权的归属发生纠纷或者人民法院裁定对专利权采取保全措施，专利权的质押手续被暂停办理的；  　　（七）债务人履行债务的期限超过专利权有效期的；  　　（八）质押合同约定在债务履行期届满质权人未受清偿时，专利权归质权人所有的；  　　（九）质押合同不符合本办法第九条规定的；  　　（十）以共有专利权出质但未取得全体共有人同意的；  　　（十一）专利权已被申请质押登记且处于质押期间的；  　　（十二）其他应当不予登记的情形。  **第十三条** 专利权质押期间，国家知识产权局发现质押登记存在本办法第十二条第二款所列情形并且尚未消除的，或者发现其他应当撤销专利权质押登记的情形的，应当撤销专利权质押登记，并向当事人发出《专利权质押登记撤销通知书》。  　　专利权质押登记被撤销的，质押登记的效力自始无效。  **第十四条** 国家知识产权局在专利公报上公告专利权质押登记的下列内容：出质人、质权人、主分类号、专利号、授权公告日、质押登记日等。  　　专利权质押登记后变更、注销的，国家知识产权局予以登记和公告。  **第十五条** 专利权质押期间，出质人未提交质权人同意其放弃该专利权的证明材料的，国家知识产权局不予办理专利权放弃手续。  **第十六条** 专利权质押期间，出质人未提交质权人同意转让或者许可实施该专利权的证明材料的，国家知识产权局不予办理专利权转让登记手续或者专利实施合同备案手续。  　　出质人转让或者许可他人实施出质的专利权的，出质人所得的转让费、许可费应当向质权人提前清偿债务或者提存。  **第十七条** 专利权质押期间，当事人的姓名或者名称、地址、被担保的主债权种类及数额或者质押担保的范围发生变更的，当事人应当自变更之日起30日内持变更协议、原《专利权质押登记通知书》和其他有关文件，向国家知识产权局办理专利权质押登记变更手续。  **第十八条** 有下列情形之一的，当事人应当持《专利权质押登记通知书》以及相关证明文件，向国家知识产权局办理质押登记注销手续：  　　（一）债务人按期履行债务或者出质人提前清偿所担保的债务的；  　　（二）质权已经实现的；  　　（三）质权人放弃质权的；  　　（四）因主合同无效、被撤销致使质押合同无效、被撤销的；  　　（五）法律规定质权消灭的其他情形。  　　国家知识产权局收到注销登记申请后，经审核，向当事人发出《专利权质押登记注销通知书》。专利权质押登记的效力自注销之日起终止。  **第十九条** 专利权在质押期间被宣告无效或者终止的，国家知识产权局应当通知质权人。  **第二十条** 专利权人没有按照规定缴纳已经质押的专利权的年费的，国家知识产权局应当在向专利权人发出缴费通知书的同时通知质权人。  **第二十一条** 本办法由国家知识产权局负责解释。  **第二十二条** 本办法自2010年10月1日起施行。1996年9月19日中华人民共和国专利局令第八号发布的《专利权质押合同登记管理暂行办法》同时废止。 |